

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33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강남자원회수시설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이며, 위탁기간이 '26. 5. 31.자로 만료될 예정임
- 나. 소각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·관리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
- 나. 위탁기간 : 3년 ('26년 6월 1일 ~ '29년 5월 31일)
-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(폐기물의 광역 처리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필요성

- 생활폐기물의 반입·처리 등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

라. 위탁사무 내용

-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
- 소각,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·보수
- 고압증기, 전력 생산 및 판매
-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
-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, 용역, 물품 등 계약·관리
일반사무처리
- 자원회수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오염물질(배출가스, 폐수 등)의 설계
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
-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된 업무(폐기물관리법 등
환경관련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)
-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

마. 시설개요

- 시 설 명 : 강남자원회수시설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(일원동)
- 부지면적 : 63,818 m^2
- 시설규모 :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00톤/일(300톤/일 × 3기)
- 처리권역 : 8개 자치구(강남구, 강동구, 관악구, 광진구, 동작구,
서초구, 성동구, 송파구)

- 주 용 도 :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소각 처리 및 소각열 회수를 통한 자원화
- 주요장비 : 소각설비, 소각재처리설비, 연소가스처리설비 등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사. 소요예산(비정산비 기준) : 25,307백만원('26. 6.~'29. 5.)

(1차년도 : 8,196백만원, 2차년도 : 8,433백만원, 3차년도 : 8,677백만원)

아. 기대효과

- 폐기물 소각 및 자원회수 분야에 특화된 민간기업의 전문지식, 기술력, 설비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성능 유지 가능
- 계약에 따른 성과지표(성과관리 기준 등)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
- 자원회수시설 운영이라는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민간에 맡김으로써, 서울시는 정책 수립 및 감독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음

자. 20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5.09.25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

제5조(폐기물의 광역 관리) ①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(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)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3.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한 자,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,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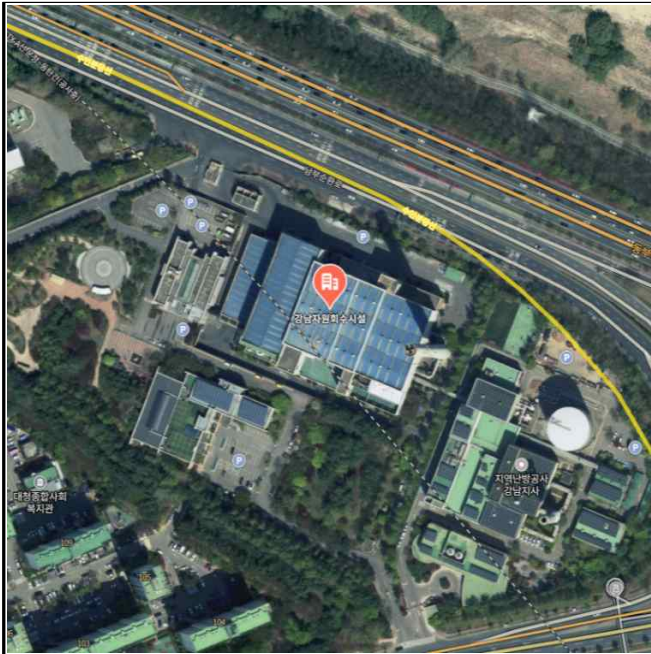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김태현(☎2133-9953)

붙임

강남자원회수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

○ 시설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(일원동)



시설 위치



시설 전경